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「기능성양잠산업육성및지원에
관한법률」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「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기능성 양잠산업 범위 확대 등 양잠산업 육성·발전을 위한 「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(‘22.12.27.)됨에 따라 기능성 양잠 산물의 범위를 추가하고, 우수 누에 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·공급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권한 위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기능성 양잠 산물의 범위 추가를 위한 조문 개정(시행령 안 제2조)

나. 기능성 양잠산업 종합계획·시행계획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(시행령 안 제3조)

다. 우수 누에 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·공급 정책에 대한 세부 규정 신설(시행령 안 제 5조)

라. 양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(시행령 안 제6조)

마. 권한의 위임 규정 추가 신설(시행령 안 제7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생 략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고치”를 “고치, 잠분(蠶糞: 누에똥) 및 뽕나무의 가지와 뿌리”로 한다.

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7조로 하고, 제3조,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

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1. 종합계획과의 적합성
2. 목표 달성도
3. 추진체계 및 자원 배분의 적정성
4. 추진사업의 적합성

⑤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추진실적을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우수 누에 품종 육성 및 생산·공급 정책 수립·시행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·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우수 누에 품종의 지정·폐기
2. 우수 누에 품종 지정 시험
3. 누에씨 생산·공급 관리 및 병독검사
4. 그 밖에 우수 누에 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·공급에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·공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6조(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)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

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
2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
3.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
4. 운영경비 조달계획서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,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강사료와 수당
2.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 기자재 구입비
3.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

④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
2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
3.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
4.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

제9조의3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.

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
3.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4.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4조는 종전의 제3조(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)와 같다.

제7조(권한의 위임) 종전의 제4조 중 “법 제6조에 따른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”를 “다음 각 호의 권한을”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
2. 법 제9조의2에 따른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
· 공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시행
3. 법 제9조의3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기능성 양잠 산물) 「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“이란 대량 사육이 가능하게 순화된 천잠(天蠶: 참나무뿔누에), 작잠(작蠶: 십누에), 상잠(桑蠶: 뿔누에) 및 피마잠(피麻蠶: 아주까리누에)과 그 <u>고치</u> 를 말한다.	제2조(기능성 양잠 산물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고치, 잠분(蠶糞: 누에똥) 및 뽕나무의 가지와 뿌리</u> ---.
제3조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4조 (현행 제3조와 같음) 제3조(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(이하 “ <u>시행계획</u> ”이라 한다)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(이하 “ <u>종합계획</u> ”이라 한다)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

<u>제4조(권한의 위임) 농림축산식품 부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기능성 양잠산업</u>	<u>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 지사”라 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</u> <u>③ 시·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 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</u> <u>④ 농림축산식품부장은 법 제 5조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 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 <u>1. 종합계획과의 적합성</u> <u>2. 목표 달성도</u> <u>3. 추진체계 및 자원 배분의 적 정성</u> <u>4. 추진사업의 적합성</u> <u>⑤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7 항에 따라 연도별 세부 추진계 획의 추진실적을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, 그 결과 를 다음 연도의 연도별 세부 추 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 <u>제7조(권한의 위임) ----- ----- 다 음 각 호의 권한을-----</u>
--	--

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
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
게 위임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----.

1.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

2. 법 제9조의2에 따른 우수 누
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
씨의 생산·공급에 관한 정책
의 수립·시행

3. 법 제9조의3에 따른 전문인
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
관 지정

제5조(우수 누에 품종 육성 및 생
산·공급 정책 수립·시행) ①
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
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
항이 포함된 우수 누에 품종의
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·
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
할 수 있다.

1. 우수 누에 품종의 지정·폐
기

2. 우수 누에 품종 지정 시험

3. 누에씨 생산·공급 관리 및
병독검사

4. 그 밖에 우수 누에 품종 육성
및 우량 누에씨 생산·공급에

<신 설>

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·공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6조(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

등)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
2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
3.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
4. 운영경비 조달계획서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

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,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강사료와 수당
2.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 기자재 구입비
3.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

④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
2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
3.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
4.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지

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.

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2.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

3.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
4.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	
연 락 처	(044) 201 - 2142